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경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
----------	-----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7일
발 의 자 : 이경일 의원 외 3인(변창윤
의원, 박영한 의원, 양은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도시형소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라. 도시형소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도시형소공인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필요
- 다.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하 "소공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4.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소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으로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
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공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